

의료상 비밀과 관련된 사자의 사생활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것은 상속인에게도 승계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불법적인 서적의 간행은 금지된다.

Editiona Plon, Gubler et autres c / Danièle Mitterrand et autres

파리고등법원(Cour d'appel de Paris) 1997 년 5 월 27 일

성낙인 (영남대 법학과 교수) 역

사실관계

첫째, Orban 씨는 'LE grand Secret(엄청난 비밀)'이라는 책이 플롱사(Les Editiona Plon)에서 발행할 당시에 발행인 겸 사장이었고; 둘째, 이 사건에서 1881 년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해서는 원 · 피고 어느쪽에서도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1996 년 7 월 5 일자 제 1 심 판결에서 나타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Orban 씨는 Les Editions Plon 의 발행인 겸 사장으로 형사법원에 피소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Orban 씨는 1995 년 11 월에서부터 1996 년 1 월 사이에 비록 파리에 체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프랑스 영토 내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시효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한편 직업상 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해서 공법으로 피소된 Claude Gubler 씨는 Gonod 씨와 더불어 Le Grand Secret 의 편집과 출판에 간여한 바 있고, 그 자신이 Le Grand Secret 의 판매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이 인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형법 제 121-6 조, 제 121 조, 제 226-13 조, 제 226-31 조 위반혐의로 피소되었다.

제 1 심 형사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Orban 씨에 대하여 Mitterrand 전 프랑스 대통령의 유가족들이 제기한 위법사실 중 유책적인 사항은 문제의 Le Grand Secret 라는 책을 제작하고 판매한 점이다. 한편 Gubler 씨가 미테랑 전 대통령의 주치의로서 지득한 직업상 비밀을 이 책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책을 출간한 Les Editions Plon 출판사의 발행인인 Orban 씨와는 적어도 민사적인 책임에 관한 한 분리할 수 없는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Les Editions Plon 출판사와 Orban 씨의 민사적 책임은 여기서 문제삼지 아니한다.

판결이유

첫째, François Mitterrand 전 대통령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주장하는 Mitterrand 유가족들의 청구에 관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은 그 신분 · 출신성분 재산 · 직위가 여하하든 간에 사생활존중권을 갖는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생활을 어떠한 형태로든 공개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생존자에게만 인정된다.

따라서 Mitterrand 의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이를 공표함으로써 유가족들의 François Mitterrand 에 대한 추억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둘째, Mitterrand 유가족들의 사생활침해에 대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제 1 심법원은 Le Grand Secret 의 내용 중 일부는 Mitterrand 대통령 유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François Mitterrand 대통령이 그의 부인에게 자신의 병에 관해서 알리지 말 것을 부탁한 것과, Mitterrand 전 대통령의 숨겨놓은 딸인 Pigneot 양에게 Mitterrand 대통령이 가끔 Gubler 씨를 보냈다는 점, Mitterrand 부인이 있는 데서 그의 손녀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점, Mitterrand 대통령과 그의 딸 사이에 나눈 대화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점, 1981 년 Mitterrand 대통령이 암에 걸린 사실을 부인과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

생각건대 하지만 이러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실이 민법 제 9 조에 의거한 손해배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 자체가 비록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Le Grand Secret 에서 적시한 Mitterrand 유가족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은 책의 전체적인 흐름에 비추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의 출간 자체를 금지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셋째, 의료상의 비밀에 대한 침해에 관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996 년 7 월 5 일의 제 1 심 판결에 의하면, 이와 같은 사안은 민사적인 문제로서, Gubler 씨는 직업상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와 같은 제 1 심법원의 판결을 살펴 보건대, 직업상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는 일정한 직업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지켜야 할 일반이익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수한 이익의 보호라는 관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인은 자기와 관련된 일을 하는 자가 자신에 관한 비밀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 그 내용에 관한 신뢰에 관한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되므로 직업상의 비밀은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특히 의료행위와 관련하여서 의사는 환자의 병에 관해서 진찰하고 이에 따른 처치를 행하게 되는 바 이 경우 환자로서는 의사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여 의사의 처방에 따르게 되는 바, 바로 이러한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은 노출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본다.

의료법 제 4 조 제 2 항에서는, 의료상의 비밀은 "의사가 직업으로서의 의사로서 활동하는 가운데 지득한 모든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환자가 의사에게 진술한 내용 뿐만 아니라 의사가 보고 듣고 이해한 모든 것을 포함하게 된다."

생각건대 이 사건에서 Gubler 씨와 François Mitterrand 의 관계는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로서 접촉이 계속되어 왔던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Gubler 씨가 François Mitterrand 에 관해서 Le Grand Secret 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의사로서 환자에 관해서 알게 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서 볼 수 있으며, 그것은 의료법상의 직업상 비밀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Gubler 씨는 환자인 François Mitterrand 의 사생활 및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François Mitterrand 의 유가족들은 Mitterrand 의 권리를 승계한 것으로 주장하는 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살펴 보건대 우선 문제의 책은 Mitterrand 대통령의 사후에 출간된 사실이 인정되지만, 다른 한편 이 책의 출판 계약은 Mitterrand 전 대통령의 생존시점인 1996 인 11 월 8 일에 체결된 점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의료상 비밀이 전달된 경로를 살펴 보면, 1995 년 5 월과 6 월 사이에 Gubler 씨에게 전달되었고, 이어서 1995 년 11 월에는 Orban 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Orban 씨는 1995 년 11 월 8 일 이를 책으로 출간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배상책임에 관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표현의 자유의 행사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유럽협약' (convention europeenne des droit de l'homme et des libert s fondamentales) 제 10 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바 그것은 헌법적 가치를 갖는 원리로서 의무와 책임을 동반하게 된다. 표현의 자유의 행사는 법률상 규정된 일정한 양태·조건·제한과 제재를 받게 된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의 행사에 필요한 요건은 민주사회에서 상호간의 신뢰에 기초한 정보를 폭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그것은 특히 건강·명예·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을 간행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책의 판매금지를 통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문제는 궁극적으로 종결될 수 있다. 제 1 심법원에서 이미 적시한 바 있는 바와 같이, 이 책은 40,000 권 이상이 판매되었고, 따라서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살펴 보건대 그 책은 엄청난 반향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음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추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섯째, 배상금액과 관련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미테랑의 유가족들에게 30,000 프랑의 배상금지불을 제 1 심법원에서 명한 바 있다.

주문 : 위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Olivier Orban 씨는 책임이 없다.

Mitterrand의 유가족들이 Mitterrand의 사생활침해에 따른 배상청구는 이유없다.

Gubler 씨와 Le Editions Plon 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미테랑 대통령의 부인인 Mitterrand Danièle 에 대하여서는 100,000 프랑을 지불할 것을 명한다. 그 외에 3 명의 Mitterrand 유가족에게는 각기 80,000 프랑의 지불을 명한다.

1996년 1월 8일 파리지방법원장이 명한 이 책의 배포금지명령은 1996년 3월 13일 판결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된 바와 같이 정당한 것임을 확인한다.

Gubler 씨와 Les Editions Plon 사는 제 1 심법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신민사소송법 제 700 조의 규정에 따라 30,000 프랑의 비용부담을 명한다.

그러나 Orban 씨는 미테랑 유가족들에 대하여 비용부담을 할 필요가 없다.

판결해설

1. 사자의 권리와 생존자의 권리

파리고등법원의 판결은 파리지방법원의 1996년 10월 23일 판결을 원칙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파리고등법원은 Gubler 박사의 Le Grand Secret 라는 책의 배포를 금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테랑 대통령의 유가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은 적어도 언론을 통해 드러난 여론을 수렴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판결은 그간 상속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전개되어 왔던 그간의 논리와는 상당한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는 매우 복잡한 논리전개를 통하여 그간 불명확하던 상속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점이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정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사자의 사생활과 생존자의 권리

파리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사자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것은 여전히 불명확하고 부수적인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한 한 무엇이 사자의 고유한 권리인지 또는 무엇이 생존자의 고유한 권리 인지가 구별되어야만 할 것이다.

2-1. 사자의 고유한 권리?

사생활존중권이 고유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사생활존중권이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멸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해서, 파리고등법원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책의 저자와 발행인의 책임문제에 관해서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법원은 "사생활을 어떠한 형태로든 공개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생존자에게만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존중권은 일응 당사자의 고유한 권리로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상속인에게 사생활존중권이 있다고 할 경우에도, 제소가 사자명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존자의 명의로 제소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분명하지 않는 것 같다. 권리의 존재와 권리의 행사는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사생활의 존중을 보장하기 위한 소송이나 사생활권 그 자체는 생존자에게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또한 사생활보호를 위한 생애가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사자는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파리고등법원은 Mitterrand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이 사자의 사생활에 관하여 어떠한 형태로의 폭로도 금지시킬 것을 주장한대 대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생활존중권을 일부 인정 하고 있는 바, 그것은 악의적으로 발표하거나 왜곡된 사실을 발표하는 것으로 인하여사자의 추억에 대한 침해를 야기하는 경우에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민법 제 9 조에서 규정하는 사생활보호가 아니라, 민법 제 1382 조의 적용을 통하여 야기되는 손해배상의 문제로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사자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의 권리인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왜 사생활보호권과 책임문제가 구별되어야 되는지에 관해서 의문이 제기된다. 그것은 또한 사생활존중권과 의료상 비밀의 존중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의 문제가 제기된다.

2-2. 생존자의 고유한 권리

파리고등법원은 미테랑 유가족들이 사자의 사생활침해에 대한 권리는 부인하고 있지만, 생존자 즉 유가족의 고유한 권리보호를 위한 제소행위는 인정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혹자는 사자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생존자의 사생활도 동시에 관계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민법 제 9 조에서는 "각자는 사생활 존중권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생존자는 사생활존중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생존자중 일부는 공표에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할 경우에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파리고등법원은 미테랑의 유가족들이 그들의 사생활존중이라는 고유한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제소한 것을 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파리고등법원은 파리지방법원의 판결과 같이 이러한 사생활침해를 한 위반행위에 따라서 책의 배포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후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의료상 비밀의 존중권에 대한 침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3. 의료상 비밀과 관련된 사자의 권리와 생존자의 권리

파리고등법원의 분석에 비추어 본다면 사안의 주요성에 비추어 한편으로는 사생활존중권의 침해를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상 비밀의 존중권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권리의 존재와 행사 및 이 권리의 주체의 결정에 관해서도 논급하고 있다.

의료상 비밀의 존중권은 사망하기 전에 사자의 권리로서 존재하며 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본다.

3-1. 사망이 전에 발생 하는 권리

의료상 비밀의 침해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파리고등법원으로서 Le Grand Seret 라는 책의 출간이 사망이후에 있었다는 점을 적시하면서도, 출간계약이 사망 이전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밀의 폭로를 담고 있는 출판계약 그 자체만으로는 의료상 비밀의 침해 행위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출판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왜 출판 문제를 거론하는지 의문이다. 비밀의 폭로 일자가 바로 권리의 발생이나 존재요건이라면, 사자의 경우에 이 출판일자가 문제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사생활존중권과 의료상 비밀의 존중권이 구별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 법원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

3-2. 상속을 통한 권리

의료상 비밀권은 미테랑 대통령의 생존시에 발생하였던 것이고, 법원은 판시하기를 상속인은 "공표결과에 따른 배상을 추궁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고 본다. 그런데 공표는 당사자의 사망 이후에 행해졌으며, 따라서 배상권은 상속인의 고유한 권리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법원의 논리전개에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생활존중권과 배상책임에 관하여 상이한 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법원으로서 상속인은 승계를 통하여 의료상 비밀침해에 연계된 손해배상권을 갖는다고 본다.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제 1 심법원에서 정확하게 평가한 바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4. 결 어

원상회복과 관련하여서 법원은 책의 배포금지를 명하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형사법적인 책임과 침해된 손해에 대한 유일한 최종적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형사법적인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민사법원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형법 제 226-13 조상의 직업상 비밀의 침해에 관한 죄로부터는 이러한 배포금지라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없다.

사생활과 의료상 비밀의 존중권의 침해에 관한 사자의 권리와 생존자의 권리의 결정과 행사에 관해서 이 판례는 표현의 자유 및 정보권의 원리와 이들 권리와 의 관계를 정립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문제점을 제시한다.

법원이 "모든 사람은 그 신분 · 출신성분 · 재산 · 직위가 여하하든 간에 사생활존중권을 갖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사생활과 사생활보호의 범위는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국가원수의 의료상 비밀에 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 자신의 건강상태가 공식적으로 그 자신에 의하여 공표되었던 바, 그것이 왜곡된 정보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도 이를 사생활보호의 문제로서만 치부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는 유럽 인권 및 기본적 자유 협약 제 10 조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헌법적 가치를 갖는 것이라면, 동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이나 제재에 관한 사항 역시 유럽인권법원을 통해서 완전히 필요하고 정당화되고 적합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LEGIPRESSE Revue mensuelle du droit de la communication 통권 143 호,
1997 년 7~8 월호(제 6 호), 100-103 면)